

건설부, 건설업체 행정처분규칙 제정

건설부는 지난 8월23일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으로 범위 반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면허취소 등의 제재처분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규칙을 마련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뒤 곧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규칙안은 우선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이해관계인으로부터 행정처분기관이 범위반 사실을 통보받거나 인지한 때는 10일 이상 해당업체에 소명 기회를 준뒤 청문(廳聞)절차를 밟도록 했다.

■행정처분 결정기준

[면허취소사유]

(1) 면허기준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기간종료후 기준보완미필시

(2) 면허를 받은후 1년 이상 휴업

(3) 불법 일괄하도급·조잡시공을 한 업체로서 1년 이내 같은 사유로 3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거나 공사시공능력상실이 인정될 때

(4) 타법령·기관으로부터 면허취소요구가 있는 업체로서

1년 이내 같은 사유로 3회 이상 같은 위반행위를 하거나 공사시공능력 상실이 인정될 때

(5) 기타 건설업법 52조(면허취소 등)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중 청문불응업체

[영업정지처분]

(1) 시정명령 불응

(2) 최근 1년 이내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고 3회 이상 불응

(3) 하자담보책임기간내 3회 이상 하자발생시(구조안전에 중대피해, 공중에 중대위해, 주요 구조부는 2회 이상)

(4) 최근 2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이 법정기준의 50% 미만시

(5) 고의로 하도급통지를 허위로 한 때

(6) 3명 이상 사망재해

(7)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타기관 영업정지 요구시

(8) 영업범위 위반 도급·자제품질선정 및 관리시험 미 실시자로 1년 이내 한 번 이상 행정처분사실이 있는 때

(9) 한도액 초과·하한선 위반·하도급 규정 위반사유로 1년 이내 같은 사유로 2회 이상 처분 사실이 있는 때

(10) 기타 법 제50조(영업정지)의 해당사유로 청문불응·과징금 미납부·공사시공능력의 현저한 상실

[과징금]

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자로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가감산기준]

영업정지의 경우 가산은 각 사유별로 1/2월씩, 감산은 1월씩 계산하도록 하고, 과징금은 각 사유별로 1/8씩 가감산하되 과징금율은 소수점 3자리에서 절사토록 했다.

(1) 가산

㉠ 동기 : 고의·중대과실

㉡ 내용 : 공중피해발생 및 사회적 지탄

㉢ 횡수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2회 이상

㉣ 건수 : 위반건수가 3건 이상이거나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된 때

(2) 감산

㉠ 동기 : 과실이 없고 정상참작 필요시

㉡ 내용 : 공중위해사실이 없는 때

㉢ 횡수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 건수 : 위반건수 2건 이하로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한 때